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
부동산등기법 100~100p 7. (1) ㉔ ㉕	오타	7. 관련문제 (1) 피상속인(소멸회사)명의로 등기에 가처분등기의 실행 여부 ㉔ 예 외 ㉕ 촉탁 절차 : 가처분권리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·합병회사·분할회사 등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등기법 제27의 관계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또는 소멸회사명의로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승계관계를 표시하여 즉 등기의무자를 ‘망 ○○○의 상속인 ○○○’(소멸○○○회사의 합병회사 ○○○) 등으로 표시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(등기예규 제881호, 대판 1995.2.28. 94다23999).	7. 관련문제 (1) 피상속인(소멸회사)명의로 등기에 가처분등기의 실행 여부 ㉔ 예 외 ㉕ 촉탁 절차 : 가처분권리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·합병회사·분할회사 등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관계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또는 소멸회사명의로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승계관계를 표시하여 즉 등기의무자를 ‘망 ○○○의 상속인 ○○○’(소멸○○○회사의 합병회사 ○○○) 등으로 표시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(등기예규 제881호, 대판 1995.2.28. 94다23999).														
부동산등기법 144~144p Ⅷ 1. ③	오타	Ⅷ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. 대장등본 등 ③ 이를 위하여,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(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), 대장과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 12호).	Ⅷ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. 대장등본 등 ③ 이를 위하여,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(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), 대장과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 11호).														
공탁법 226~226p 정리#26	개념,공식-설명	정리#26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<table><tr><td>관 할</td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공탁신청</td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</td></tr></table>	관 할	내용동일	공탁신청	내용동일	내용동일	내용동일	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	정리#26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<table><tr><td>관 할</td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공탁신청</td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내용동일</td></tr><tr><td>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 X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 X</td></tr></table>	관 할	내용동일	공탁신청	내용동일	내용동일	내용동일	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 X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 X
관 할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공탁신청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																
관 할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공탁신청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내용동일																
	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: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은 "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, 전세권, 저당권"에 기재할 사항 X, 그 권리자도 "피공탁자란"에 기재 X										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